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

제 10호: 2024년 1월

Contents

- 3**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개정세법
- 8**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시급 인상
- 10** 회계감사 업데이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 공개초안 및 자본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FICE”) 분류에 관한 개정안 공개초안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는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에서 발행합니다. 이 발행물은 고객사에게 한국 내 감사 및 세무, 기타 법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개정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인사이트 & 개정사항 업데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자르 새빛회계법인은 본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정보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연간 주요 개정세법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단일세율' 적용 연장 기간이 2028년에서 2026년으로 단축된 부분입니다. 그 외의 수정 사항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유사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법인세

1)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요건 완화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해 지분율 조건을 5%에서 2%로 완화합니다.

- 자회사 범위
 -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배당기준일로부터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i)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 (의제배당소득)

ii)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등의 수입배당금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2024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과약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등에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합니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등의 행사 또는 지급
 - iii)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의될 것이며, 기존 제시된 정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 ·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 ·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 · 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ii) 주식기준보상 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정의될 예정
- 제출자료: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주식기준보상 부여 · 행사 · 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의될 예정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 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3월 10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업데이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해외신탁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며, 거주자·내국법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해외신탁: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 i) 신탁설정 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당 1회의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 ii)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여됩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의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신탁재산가액: 시가 또는 취득가액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

개정된 법안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대상 확대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 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도 별도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기존의 대규모법인 제외항목 삭제
 - 대규모법인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를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에서 개별 규정 ·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제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3)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인 구성기업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등으로 규정합니다.



세법 업데이트 그 외 세법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사택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사항이 신설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19%의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 (6~45%) 선택 가능
 - 비과세 ·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득세법 개정사항

개인 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소득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로 적용되며, 다음 뉴스레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인사 & 급여 업데이트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최저임금이 아래와 같이 2.5% 인상 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860원
월급 (209시간 기준)	2,010,580원	2,060,740원
인상율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5.0% 인상	2023년 대비 2.5% 인상



회계감사 업데이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 공개초안 및 자본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FICE”) 분류에 관한 개정안 공개초안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23년 8월에 ESG 공시 인증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ISSA 5000)의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자본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FICE”) 분류에 관한 IAS 32, IFRS 7 및 IFRS 1 개정안의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 공개초안

ISSA 5000은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윤리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회계법인 외의 독립 기구도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인증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포괄적 기준의 성격

- 원칙중심의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모든 준거기준과 모든 정보이용자 및 모든 인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한적 확신업무와 합리적 확신업무를 모두 다루며, 단독기준으로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ISAE(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ISAE 341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윤리 및 품질관리의 요구사항

- 업무팀원: 인증업무와 관련된 국제윤리기준 (IESBA Code)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나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 준수를 요구합니다.
- 법인: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해 국제품질관리기준서 1 (ISQM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나 다른 전문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3.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 대상 정보는 기업이 보고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ISSA 5000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인증 대상인 정보만을 의미하므로, 보고하였으나 인증대상이 아닌 정보는 '기타정보'에 해당합니다.
- 인증인은 인증업무의 범위가 명확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가 '합리적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 공개초안

인증업무의 범위

구분	합리적 확신	제한적 확신
위험절차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중요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위험절차를 수행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위험절차를 수행, 위험평가 미요구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 전부에 대해 통제활동의 이해 후 통제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내부통제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해 조건부로 통제활동을 이해 후 통제미비점이 식별되었는지 여부를 고려
위험에 대한 대응	추가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는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 위험에 대응	추가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는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시 항목에 초점
추정치와 미래예측정보	경영진의 추정치의 기초정보를 테스트 또는 미래예측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추정치 도출 등의 절차 수행	추정치 또는 미래예측 정보의 준거기준 요구사항 또는 산출하는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

5. 부정

- IAASB는 지속가능성 정보 내부통제가 성숙되기 이전이므로 부정(‘그린워싱’ 포함)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인증업무 전반에서 부정에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증거로 이용하려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부정 위험을 나타내는지 고려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의구심의 유지해야 합니다.

6. 왜곡표시의 집계와 평가

- 각 공시 지표 별로 왜곡 표시의 중요성을 개별 평가하며, 지표마다 정보이용자의 허용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방사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
- 정량화 할 수 없는 왜곡표시는 그룹화하여 중요성을 평가하며, 왜곡표시의 공통된 방향과 어조 및 추세 때문에 지속가능성 정보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정보

- ISSA 5000은 개정 ISA 720과 동일하게 (a) 기타정보를 열람하고, (b) 기타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또는 인증인의 지식간 중요한 불일치가 있는지 고려하고, (c) 기타정보에 중요한 왜곡표시의 징후가 있는지 유의하도록 요구합니다.
- 인증보고서일 이전 기타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인증보고서에 ‘기타정보’ 단락을 별도로 포함하고 ‘기타정보’에서 미수정 중요왜곡표시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기술해야 합니다.

8. 커뮤니케이션

- 인증인은 경영진, 지배기구 등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유의적 사항을 발견했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커뮤니케이션의 예시 : 부정 또는 법규 위반, 내부통제 미비점, 경영진의 편익, 미수정 왜곡표시, 경영진의 자료 제공 거절 등 업무수행 중 직면한 어려움

9. 인증보고서

- 인증보고서는 ISAE 3000, ISAE 3419을 기초로 하되, 감사보고서의 순서와 내용을 반영합니다.
- 제한적 확신인 경우 수행한 절차가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좁다는 점, 확신 수준이 합리적 확신업무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을 ‘결론에 대한 근거’ 단락에 기술합니다.

회계감사 업데이트

자본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FICE”) 분류에 관한 개정안 공개초안

FICE (자본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목적은 IAS 32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IAS 32의 실제 적용 문제를 해결하며 공시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2024년 1분기까지 의견을 조회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

1. 포괄적 기준의 성격

- 원칙중심의 모든 지속가능성 정보의 인증에 적합한 기준으로서, 모든 준거기준과 모든 정보이용자 및 모든 인증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한적 확산업무와 합리적 확산업무를 모두 다루며, 단독기준으로서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ISAE(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실가스보고서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ISAE 3410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윤리 및 품질관리의 요구사항

- 업무팀원: 인증업무와 관련된 국제윤리기준 (IESBA Code)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나 다른 전문직 요구사항 준수를 요구합니다.
- 법인: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해 국제품질관리기준서 1 (ISQM 1) 또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법규나 다른 전문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3. 인증업무의 범위

- 인증 대상 정보는 기업이 보고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 ISSA 5000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는 인증 대상인 정보만을 의미하므로, 보고하였으나 인증대상이 아닌 정보는 ‘기타정보’에 해당합니다.
- 인증인은 인증업무의 범위가 명확한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가 ‘합리적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핵심 지표

주요 세율 및 4대 보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6.5%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8.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6.2 %
10억원 초과	49.5%

*지방소득세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9%
2억원 초과 200억원 미만	20.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미만	23.1%
3000억원 초과	26.4%

*지방소득세 포함

4대 보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비율	근로자 부담비율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4.0%	4.0%
국민연금	4.5%	4.5%
고용보험	0.9% + (0.25%~0.85%)	0.9%
산재보험	0.7% ~ 18.6%	
총합	월 평균보수의 약 10.35% ~ 28.85%	월 평균보수의 약 9.4%

위 표에 기재된 사업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른 추가보험률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률에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Contacts

마자르 새빛회계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0길 11,
용산더프라임 (업무동) 19층
04315

Tel: (+82) 2 3438 2400

Fax: (+82) 2 546 2368

Email: contact@mazars.kr

Seung-ha Park, 박승하

파트너, 대표이사, 세무
seung-ha.park@mazars.kr

Julien Herveau, 줄리앙 에르보

파트너, 국제 데스크 담당
julien.herveau@mazars.kr

Jung-min Lee, 이정민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jung-min.lee@mazars.kr

Gyu-taek Sim, 심규택

파트너,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gyu-taek.sim@mazars.kr

www.mazars.kr

마자르는 감사, 회계, 자문, 세금 및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제적 통합 파트너십입니다.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자르는 50,000명 이상의 전문가(마자르 통합 파트너십 33,000명, North America Alliance 17,000)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든 규모의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합니다.

*해당 국가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

www.mazars.com

© Mazars 2024

본 발행물 제작에 참여한 마자리안:

줄리앙 에르보, 박승하, 이정민, 심규택, 정상안, 박동원, 김양규,
장유미, 김은유, 정한움